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hae.go.kr>

선

기관의장

람

제2038호

2026. 10. 19.(월)

차 례

고 시

- | | | |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64호 | 도시관리계획(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 |
| | 결정(변경)고시 | ———— 1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67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 ———— 18 |

공 고

- | | | |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82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
| | | ———— 19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97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
|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21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105호 |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
| | | ———— 33 |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164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산14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산14 일원	148,031.5	감) 612	147,419.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변 경 사 유	비고
1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산14 일원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에 따른 봉수대로 동측도로의 확장 개설로 인한 면적 감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용도지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8,031.5	감) 612	147,419.5	100.0	
주거 지역	소계	126,049.7	-	125,437.7	85.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776.6	-	8,776.6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73.2	-	4,173.2	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3,099.9	감) 612	112,487.9	76.3	
자연녹지지역		21,981.8		21,981.8	14.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당초	변경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3,099.9	112,487.9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 성에 따른 봉수대로 동측도로의 확장 개설로 인한 면적 감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

○ 도로총괄조서(변경없음)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 (m)	노선수	연 장(m)	면 적(m²)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8	1,598.1	17,871.7	17,871.7		-	
일반도로	계			6	1,449.9	17,348.6	17,348.6		-	
	중 로	2	15	1	489.0	8,289.9	8,289.9		-	
		3	12	2	535.1	5,477.5	5,477.5		-	
	소 로	2	8	3	425.8	3,581.2	3,581.2		-	
보행자 전용도로	계			2	148.2	476.5	476.5		-	
	소 로	3	4	2	148.2	476.5	476.5		-	
가각 및 완화차선						46.6	46.6		-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67	15	보조 간선	489.0	대로1-22호선	중로2-184호선	일반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기정	중로	3	295	12	국지 도로	217.0	중로2-184호선	소로2-61호선	일반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296	12	국지 도로	318.1	중로2-767호선	중로3-295호선	일반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4.4	중로3-296호선	중로3-295호선	일반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4.7	중로3-296호선	중로3-295호선	일반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96.7	소로2-2호선	소로2-2호선	일반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기정	소로	3	1	2.5~4	특수 도로	133.3	중로3-295호선	경서동 산14	보행자 전용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14.9	중로3-295호선	소로2-3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경서지구내부 도로	2007.11.6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주차장	서해구 경서동 산14임 일원	685.6	-	685.6	2007.11.6	
기정	2	주차장	주차장	서해구 경서동 산14임 일원	565.2	-	565.2	2007.11.6	

○ 녹지 결정조서(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경서동 산43-5임 일원	13,075.7	-	13,075.7	2007.11.6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서동 산43-5임 일원	13,075.7	감) 612	12,463.7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경서동 산32-1임 일원	1,301.4	-	1,301.4	2007.11.6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경서동 산24-6임 일원	322.1	-	322.1	2007.11.6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완충녹지)	○ 면적변경 - 13,075.7㎡ ⇒ 12,463.7㎡(감 612㎡)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봉수 대로 동측도로의 확장 개설로 인한 면적 감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경서동 산31임 일원	21,935.2	-	21,935.2	2007.11.6	

○ 가스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가스공급 설비	정압소	경서동 77-4전 일원	16.0	-	16.0	2007.11.6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도로의 이면부에서 진입해야 하는 가구는 1열로, 내부가구는 2열로 구성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총계	30필지	7,445.9	
A1	1	239.3	제1종일반주거지역
	2	238.7	
	3	238.2	
	4	237.8	
	5	268.9	
	6	245.1	
	7	239.7	
	8	239.1	
	9	238.8	
	10	238.3	
소계		2,423.9	
A2	1	244.9	제1종전용주거지역
	2	243.6	
	3	243.5	
	4	329.8	
소계		1,061.8	
A3	1	259.2	제1종전용주거지역
	2	258.7	
	3	259.5	
소계		777.5	
A4	1	230.2	제1종전용주거지역
	2	230.1	
	3	229.8	
	4	230.1	
	5	229.9	
	6	230.1	
	7	226.5	
	8	257.9	
	9	260.3	
	10	260.0	
	11	258.9	
소계		2,643.8	
A5	1	270.2	제1종전용주거지역
	2	268.8	
소계		539.0	

※ 필지 분할은 불허, 합병은 규제내용이 동일한 2개 필지에 한해 적용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획지번호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층수 (층)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1,533.8	-	81,533.8	1,470	4,116	160	-	-	
B1	40,344.7	-	40,344.7	587	1,644	160	15층 이하	60~85㎡이하	일반분양
	11,441.5	-	11,441.5	133	372			85㎡초과	
B2	29,747.6	-	29,747.6	750	2,100	160	15층 이하	60㎡이하	통합공공임대

주) 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C	1	820.1	-	820.1	※ 필지 분할은 불허, 대규모 개발 필요한 곳에 한해 합병가능
	2	820.2	-	820.2	
	3	820.0	-	820.0	
	4	818.6	-	818.6	
합계		3,278.9	-	3,278.9	

○ 기타용지(변경없음)

용지분류	획지번호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주-1	685.6	-	685.6	전체부지면적의 0.8%
	주-2	565.2	-	565.2	
합계		1,250.8	-	1,250.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A1(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	지정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순수주거용도), 6가구 이하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하여 연면적의 2/5 범위내 허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 높이 : 4층
		배치	○ 별표3의 A
		형태	○ 별표2의 A
		색채	○ 별표4의 A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A2~A5(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A2,A3, A4,A5	-	지정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순수주거용도), 4가구 이하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최고 높이 : 3층
		배 치	○ 별표3의 A
		형 태	○ 별표2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E1, E2(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B1,B2	-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최고 높이 : 15층
		배 치	○ 별표3의 B
		형 태	○ 별표2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가로변 ○ 건축한계선 5m : 단독주택지 경계

○ C(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C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것에 한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9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0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1의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3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4의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20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최고 높이 : 6층
		배 치	○ 별표3의 C
		형 태	○ 별표2의 C
		색 채	○ 별표4의 C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 가로변 ○ 건축한계선 1m : 이면부(보행자도로경계)

3)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 (별표참조)(변경없음)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없음)

구 분	A	B	C
지 정 용 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순수 주거 용도 A1-①~⑩은 6가구이하, A2~A5는 4가구 이하) • 건축법 시행령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A1-①~⑩의 1층에 한하여 연면적의 2/5내에서 허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것에 한함) •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권 장 용 도	-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별표2】 건축물 형태 분류표(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단 독 주 택 용 지	A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공동 주택 용지	B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C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pm 15\text{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별표3】 건축물 배치계획(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단 독 주 택 용 지	A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 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공 동 주 택 용 지	B	• 담장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 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설치를 권장 -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 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담장설치불허구간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 •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C	• 가로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별표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색 채
단 독 주 택 용 지	A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공 동 주 택 용 지	B	• 조화를 위하여 동측은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C	•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단, 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 색채계획목표

-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 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인 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 ~ 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② 공동주차통로
 -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권장)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확보유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유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	가로 시설물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식 재	- 수종의 선택시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해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 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 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재료는 투수성재료를 사용 유도 • 연 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 가로등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도로폭과 바닥재질 등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 단독주택지내 가로등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백열등과 같은 자연색조의 등을 사용하고 빛의 산란을 방지하기위해 불투명 반사갓을 사용한다 • 보행등 - 간선가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하부조명강화 <table><tr><th>조명</th><th>해당용도</th><th>높이</th><th>간격</th><th>광원</th><th>조명방식</th></tr><tr><td>블라드형 보행등</td><td>보행자전용/우선도로</td><td>0.8-1.5m</td><td>2-4m</td><td>백열등 나트륨등</td><td>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td></tr><tr><td>접지형 조명등</td><td>주요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td><td>접지형</td><td>불규칙</td><td>백열등 나트륨등</td><td>상향/측향/하향측 간접조명</td></tr></table>						조명	해당용도	높이	간격	광원	조명방식	블라드형 보행등	보행자전용/우선도로	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 조명등	주요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측향/하향측 간접조명
		조명	해당용도	높이	간격	광원	조명방식																			
블라드형 보행등	보행자전용/우선도로	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 조명등	주요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측향/하향측 간접조명																					
기타 사항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8】 기타사항(변경없음)

- 교통영향평가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해구 관련 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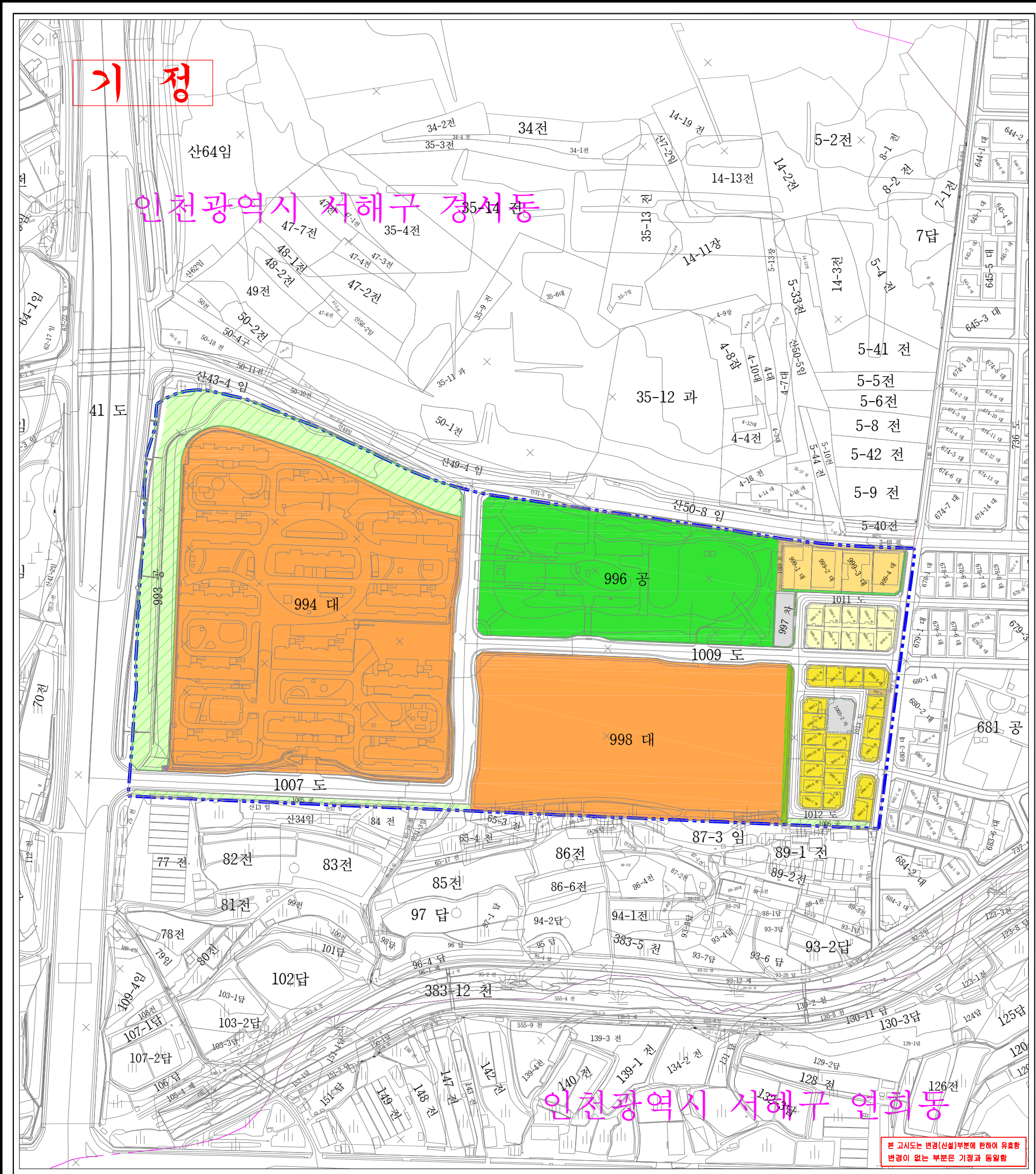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축척 1/1,500

지역·지구등 지형도면 고시도 (1)

도엽번호:검암01



0 100 250 500m

지정권자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지정일자 : 2026년 월 일

고시년도 : 2026년 월 일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고시 제2026- 호

작성년월일 : 2026년 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16

색인도

01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16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고시내용: 총 2건(건물번호 부여 1건, 폐지 1건)

구분	위치	도로명주소	고시일	부여(폐지)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부여	가좌동 585-1외 1필지	백범로810번길 17 (가좌동)	2026.10.19	신축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지	석남동 503-5외 2필지	북항로31번길 62 (석남동)	2026.10.19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해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hae.go.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8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31.(13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99누3344 등 5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 유의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해제)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99누3344	Mercedes-Benz S580 4MATIC	하****(주)	2026.09.23
2	69너9133	제네시스(GENESIS)	박*라	2026.09.10
3	231무2197	A8 L 55 TFSI quattro	이*자	2026.09.09
4	46오2620	C220 BlueTEC	배*만	2026.09.04
5	146오3919	MINI Cooper five-door	하****(주)	2026.09.03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9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재난피해자의 피해사실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및 발급대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피해사실확인서 신청 절차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별지 제2호서식)
- 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대장 관리 의무화(안 제8조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안전총괄과, 전화 560-4702, 팩스 560-2735, 이메일 khg96040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재난피해자의 피해사실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및 발급대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사실확인서 신청 절차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별지 제2호서식)
 -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대장 관리 의무화(안 제8조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 확인 후 인정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연락처	이동전화	통신사명 [] KT [] SKT [] LGU+ [] KT알뜰폰 [] SKT알뜰폰 [] LGU+알뜰폰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3.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 (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4. 간접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	[]예,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가족돌봄
심리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아니오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신고, []신고 안함	내용:
다른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신고, []신고 안함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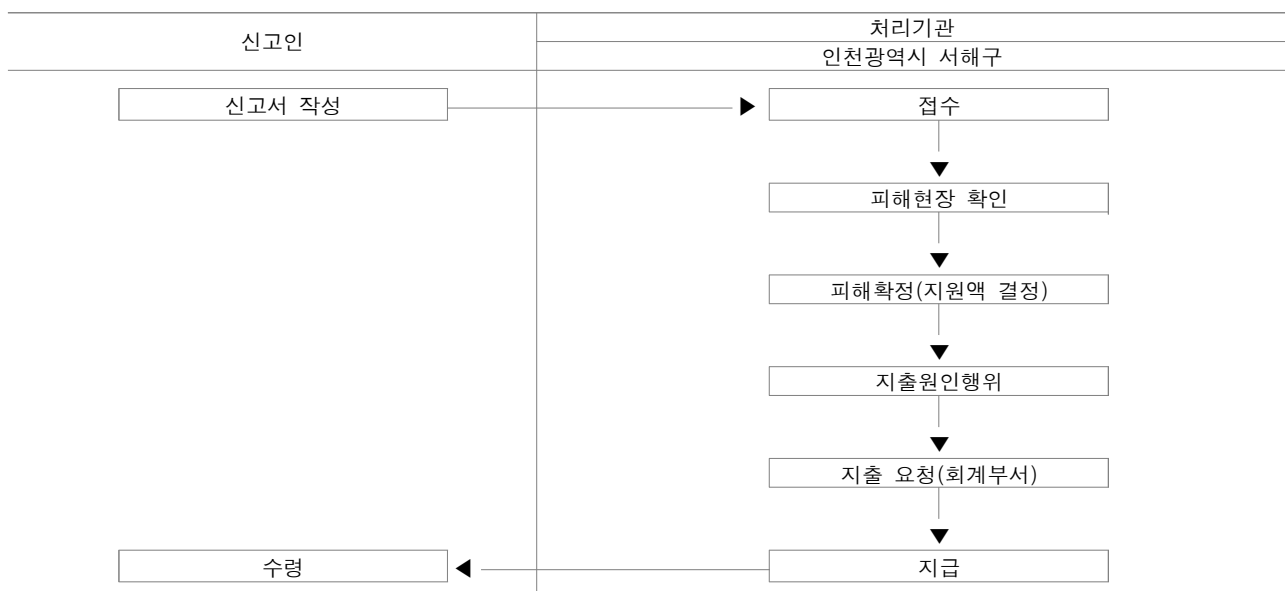
1. 생활안전지원 비용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된 후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도			
제출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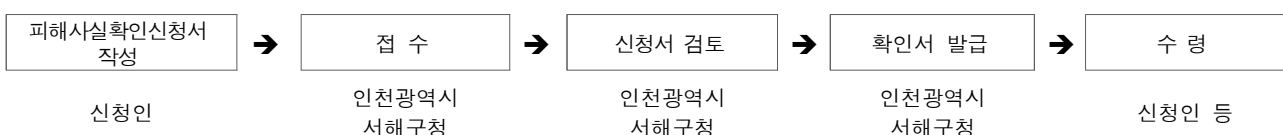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〇〇군 → 〇〇-00001
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용도	제출처
	성명	주소	생년 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u>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32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105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 하실 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92)

[붙임]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대상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유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64누4658	TWIZY	강*환	검사미필	2026. 10. 19.
2	89모9120	포터 II (PORTER II)	이*호	검사미필	2026. 10. 19.
3	47루4886	K9	김*민	검사미필	2026. 10. 19.
4	35무3638	레이	김*안	검사미필	2026. 10. 19.
5	03머9319	에쿠스(EQUUS)	대*****)	검사미필	2026. 10. 19.
6	194로4309	카니발	L*****0	검사미필	2026. 10. 19.
7	19소5924	TWIZY	박*순	검사미필	2026. 10. 19.
8	21머3088	티볼리 에어	김*민	검사미필	2026. 10. 19.
9	82보6355	봉고III 1.2톤	왕*****사	검사미필	2026. 10. 19.
10	89루8327	포터 II (PORTER II)	주*****화	검사미필	2026. 10. 19.
11	89루8327	포터 II (PORTER II)	주*****화	검사미필	2026. 10. 19.
12	193다3489	K8	고*익	검사미필	2026. 10. 19.
13	96다0808	카이로스DX168카고트레일러	강*묵	검사미필	2026. 10. 19.
14	84조2277	포터 II (PORTER II)	정*영	검사미필	2026. 10. 19.
15	95무0607	포터 II (PORTER II)	(*****션	검사미필	2026. 10. 19.
16	95무0607	포터 II (PORTER II)	(*****션	검사미필	2026. 10. 19.
17	39부1833	BMW 420d Coupe	김*수	검사미필	2026. 10. 19.
18	111너4505	GV70	최*희	검사미필	2026. 10. 19.
19	68부2028	싼타페(SANTAFE)	이*우	검사미필	2026. 10. 19.
20	83도2559	포터 II 왕바디 (PORTER II)	홍*식	검사미필	2026. 10. 19.
21	88보8862	포터 II (PORTER II)	강*식	검사미필	2026. 10. 19.
22	23다7067	제네시스(GENESIS)	홍*심	검사미필	2026. 10. 19.
23	159모8068	제네시스(GENESIS)	Z*****G	검사미필	2026. 10. 19.
24	13러9745	에쿠스(EQUUS)	(**안	검사미필	2026. 10. 19.
25	03너3905	스파크 1.0 DOHC	홍*심	검사미필	2026. 10. 19.
26	150누9101	레이	주*****설	검사미필	2026. 10. 19.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유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27	88조3685	포터 II (PORTER II)	유*석	검사미필	2026. 10. 19.
28	인천86배1616	포터 II 내장탑차 (PORTER II)	조*진	검사미필	2026. 10. 19.
29	87부3658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배*일	검사미필	2026. 10. 19.
30	19다9762	재규어 XJ 3.0D	(*****롤	검사미필	2026. 10. 19.
31	204소4109	그랜저(GRANDEUR)	주*****마	검사미필	2026. 10. 19.
32	50로7359	아반떼 (AVANTE)	장*준	검사미필	2026. 10. 19.